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2. 9. 16.(금) 10:3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정범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2년 9월 7일

○ 회부일자: 2022년 9월 13일

3. 제안이유

-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과 지위를 남용한 권리·이득 취득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취득 알선 행위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,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위원의 의무 규정에 ‘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노력’ 과 ‘위원 지위를 남용한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득 취득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취득 알선 금지’ 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)
- 위원의 자격상실 규정에 학부모위원의 학생 졸업으로 인한 퇴임의 경우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지위를 남용한 권리·이득 취득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취득 알선 행위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내실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으로 학교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.
- 학교운영위원회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와 제32조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교원·학부모·지역 위원으로 구성되어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,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, 학교의 예산과 결산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자문하는 기구¹⁾로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임.
- 교육에서 공정성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「대한민국헌법」 제3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고²⁾, 「교육기본법」 제6조에서도 “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·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·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며³⁾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5조⁴⁾에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.

1), 2) 첨부자료

3), 4) 첨부자료

-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,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,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·수련활동, 대학 입학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, 초빙교사 추천,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·임용·평가 등 학교운영 주요정책을 심의·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,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2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이 「국가공무원법」의 결격사유를 인용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59조제8항에는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위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,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는 학교 교육활동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됨.

나. 주요내용

-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학교운영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지위를 남용한 권리·이익 취득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취득 알선 행위 금지 사항을 신설한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데 있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안 제7조에 학생이 졸업한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생이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서로 다른 위원의

임기로 야기될 수 있는 혼돈을 막고 공백 없는 학교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내실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요 내용이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.

[첨부자료]

1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립·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.

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2조(기능) ① 국립·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2.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
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
4.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
5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6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7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, 임용, 평가 등
8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
9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
10. 학교급식
11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
12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
13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
14.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(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.

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2) 「대한민국헌법」 제31조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.

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.

④ 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

3) 「교육기본법」 제6조(교육의 중립성)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, 정치적·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
4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5조(정치 운동의 금지)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.

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

2. 서명 운동을 기도(企圖)·주재(主宰)하거나 권유하는 것

3.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
 4.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,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
 5.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
-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,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[대통령령](#)등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5. 18.>